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박충권 · 김태호
성일종 · 신성범 · 고동진
서천호 · 김성원 · 엄태영
김정재 · 백종현 · 구자근
강대식 · 김승수 · 김용태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,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옥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

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·분석

5의3.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 및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~ 20. (생 략)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제4조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 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·분석</u></p> <p><u>5의3.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 및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</u></p> <p>6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